

WTO體制와 競爭力 強化方案

朴 雲 緒

2천년대를 향한 새로운 貿易秩序의 기초가 되는 WTO體制가 출범함에 따라 세계경제에서 國境이 사라지고, 절대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기업만이 살아남게 되며, 정부의 역할도 크게 축소될 것이다. WTO體制의 출범이 전체적으로는 우리 경제에 失보다는 得이 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앞으로 다가올 無限競爭時代를 이겨 나가려면 產業의 競爭力 強化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과제이다. 이를 위해서는 國家競爭力은 企業의 競爭力에 달려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외국기업 및 제품에 대한 차별적 시각에서 벗어나야 하며, 公正한 競爭을 위한 규칙을 정립하는 것이 시급하다. 앞으로의 產業政策은 첫째 產業間·企業間 競爭을 촉진시키는 여건의 조성, 둘째 가격이 저렴한 生産要素의 원활한 공급, 셋째 產業組織의 효율성 제고, 넷째 생산적·협력적 노사관계에 기초한 產業平和의 정착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또한, 모든 經濟主體들이 開放化·國際化시대에 맞추어 意識을 전환하는 것도 중요하다.

1. WTO體制下的 世界經濟

1.1. WTO體制 出帆의 意義

지난 4월 12일부터 15일까지 모로코의 마라케쉬에서 세계 111개국의 대표들이 모인 가운데 열린 閣僚會議에서 UR協商에 대한 最終議定書(Final Act)와 世界貿易機構(WTO)設立協定이 채택됨으로써 지난 47년간 國際貿易秩序를 규율해 온 GATT體制가 사실상 막을 내리고, 보다 강력한 기능과 권한을 가진 WTO體制로 탈바꿈하게 되어 2천년대를 향한 새로운 國際貿易秩序의 기초가 마련되었다.

UR의 타결과 WTO體制의 출범은, 東京라운드 타결 이후 1980년대에 新保護主義 또는 新重商主義로 불리던 세계무역질서의 흐름을 다시 自由貿易主義로 되돌려 놓았다는 데에 큰 의의가 있다.

앞으로 UR 결과에 따른 새로운 國際貿易秩序는 WTO體制가 작동하게 되면 구체적인 모습을 보이겠지만 대체로 기존의 GATT體制에 비하여 다음 몇 가지 점에서 차이가 있다.

첫째, 지금까지의 GATT는 國際機構가 아닌 國際協定에 불과하여 국제무역을 규율하는데 여러 가지 한계를 드러냈지만, UR의 결과 강력한 기능을 가진 WTO가 설립되고 紛爭

解決을 전담하는 常設機構가 설치됨으로써 앞으로 안정적이고 예측가능한 國際貿易秩序를 유지·발전시킬 수 있게 되었다.

둘째, 종래의 多者協商에서는 무역자유화를 위하여 關稅引下에 주력하고 非關稅障壁의 제거는 선언적인 規範을 정립하는 수준에 머물렀으나, UR에서는 일률적인 關稅引下 외에도 주요 분야에서 관세를 아주 낮은 수준으로 하향평준화하거나 아예 철폐하였으며, 특히 그간 관세인하의 효과를 실질적으로 상쇄하였던 각종 非關稅障壁이 폐지됨으로써 관세인하가 국제무역의 확대에 직접될 수 있도록 하는 制度的 裝置가 마련되었다.

셋째, UR은 지금까지 多者間 規範의 밖에 있었던 농산물·서비스·선유 및 지적재산권 등을 WTO體制로 흡수함으로써 국제무역에 있어서 거의 모든 분야를 망라한 명실상부한 總括的 規範을 마련하였다.

끝으로, UR에 의하여 交易相對國간에 公正하고 自由로운 貿易을 실현하기 위한 貿易規範이 보다 명료해 짐으로써 자의적이고 一方的인 貿易規制를 억제하고 紛爭의 소지를 줄일 수 있게 되었다.

1.2. WTO體制 出帆에 따른 影響

앞으로 UR의 결과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이를 감시할 WTO가 正式 出帆하게 되면 무역장벽의 완화와 효율적인 자원이용이 이루어져 國際貿易 및 所得增大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GATT에서는 UR 타결에 따른 대폭적인 관세인하로 2005년까지 世界交易量이 7,500억 불 정도 증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GATT와 함께 IBRD, OECD 등 국제기구에서도 2002년까지 世界所得이 2,100~2,700억불(1992년 세계소득의 1%)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견하고 있다. 계량화가 곤란하여 이러한 분석에서 고려되지 않은 서비스분야에서의 자유화 확대와 무역규범의 강화에 따른 交易增大效果까지 감안할 경우 실제효과는 이보다 훨씬 클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競爭促進으로 경제적 효율성이 크게 향상하여 추가적인 所得增大 效果도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WTO體制의 출범이 世界經濟가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있으나, 이로 인하여 세계가 완전한 自由貿易體制에 접어들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多者主義가 강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분적으로는 雙務主義와 地域主義의 움직임이 계속될 것이며, 또한 환경·노동기준·경쟁정책·기술 등 무역과 관련이 있는 새로운 과제가 대두됨으로써 이를 둘러싼 규제강화와 자유화에 관한 논쟁이 WTO體制에서 더욱 가열될 것으로 전망된다.

1995년 1월 WTO體制가 출범함에 따라 世界經濟秩序에는 다음과 같은 變化가 구체적으

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첫째, 世界經濟는 보더리스 월드(Borderless World)로 진전될 것이다. 관세 및 비관세장벽이 축소 내지 완화되고, 농산물 투자 및 서비스의 자유화가 진전됨에 따라 생산의 글로벌리제이션(globalization of production), 마케팅의 글로벌리제이션(globalization of marketing), 글로벌한 경쟁(global competition) 현상이 가속화될 것이다.

둘째, 지난 200년간 國際貿易의 기본개념이었던 比較優位論이 퇴색하고 絕對優位論이 지배하게 될 것이다. 國境의 개념이 사라지고 生産要素의 자유로운 이동이 보장되므로 절대적으로 競爭力이 있는 자만이 시장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더로우(L. Thurow) 教授는 2차 대전 이후 지금까지는 모든 나라와 플러스셈 게임을 했으나, 앞으로는 제로셈 게임을 연출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셋째, 政府의 役割이 크게 축소될 것이다. 각국의 컨트리스케줄(Country Schedule) 제출로 국가별 관세정책이 제약을 받게 되었으며, 비관세장벽을 철폐하고 보조금 지급을 폐지 내지는 축소하게 되므로 幼稚産業保護論이나 인더스트리얼 타게팅(industrial targeting)이 퇴색해 갈 것이다. 企業과 消費者가 경제의 핵심주체가 되고 政府의 주요역할은 기술개발, 교육 및 사회간접자본 투자, 환경보호 등에 국한될 것이므로 엔터프라이스 이코노믹스(enterprise economics)가 확산될 것이다.

2. WTO體制와 우리 產業

2.1. 우리 經濟에 미치는 影響

무역의존도가 높은 작고 개방적인 경제(small and open economy)로서 우리가 그간 雙務主義, 相互主義, 地域主義 등에 시달려 왔음을 생각해 볼 때, UR의 타결로 무역·투자·지적재산권·반덤핑·세이프가드 등에 관한 국제규범이 마련되고 범인격을 가진 WTO가 창설되어 보다 강화된 紛爭解決節次에 따라 多者機構를 활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雙務的次元의 通商摩擦이 완화될 수 있다.

WTO體制의 출범이 우리 경제에 미치게 될 영향에 대해서는 KDI, KIET 등 여러 연구기관들이 발표한 것과 같이 일부분야에서 어려움이 예상되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득이 失보다 훨씬 클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UR의 타결로 우리의 수출주종품목에 대한 교역상대국의 관세율이 크게 인하되고, 무역규범이 보다 명확해 짐에 따라 선진국의 자의적인 수입규제가 억제됨으로써 우리의 輸

出增大效果가 클 것으로 보인다. 국내연구기관에서도 UR로 인한 輸入增加效果보다는 輸出增加效果가 커서 UR發效 이후 연간 5~10억불의 貿易收支 改善效果가 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다만, 농산물이나 일부 서비스 부문은 공산품에 비하여 어려움이 예상되고, 보조금 지급요건의 강화로 인하여 정부지원의 축소에 따른 일시적인 충격이 예상되는 것은 사실이다.

국내에서는 일반적으로 UR이 農產物 분야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으나, 工產品 분야에 있어서도 적극적으로 대비해야 할 사항이 있다.

첫째로, 補助金協定이다. KIET 보고서에 의하면 우리 나라 보조금은 135개 사항으로서 연간 4조 4,002억원(금융 2.3조원, 조세 2.1조원)에 이르고 있는데, 이 중 禁止補助金 6,756억원, 相計可能補助金 1조 3,339억원, 許容補助金 2조 3,907억원으로 분석되고 있다. 禁止補助金은 3년내에 철폐해야 하고, 相計可能補助金에 있어서는 상대국의 相計關稅提訴 가능성이 있다. 또한, 最貧國條項(1인당 GNP가 \$1,000이 될 때까지 금지보조금을 허용)으로 인한 開途國의 국내시장 잠식에 따라 輕工業 분야에서의 타격이 우려된다.

둘째로, 纖維類協定이다. 10년내에 섬유쿼타가 철폐됨에 따라 섬유산업내에서 경쟁력이 있는 분야와 경쟁력이 없는 분야간에 構造調整이 활발하게 진행될 것이다. 섬유산업이 우리 나라의 輸出 및 雇傭에서 20%를 차지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이 분야의 경쟁력강화가 시급한 과제이다.

셋째로, 輸入先多邊化制度의 폐지이다. 輸入先多邊化制度는 WTO협정, 수입허가절차협정 및 회색조치(Grey Area Measures) 등 국제규범에 어긋나기 때문에 이 제도를 폐지하거나 축소·운영해 나가야 한다. 이미, 현행 輸入先多邊化品目을 1994년부터 1998년까지 매년 10%씩 감축하여 현재 수준의 50%까지 단계적으로 축소할 계획을 갖고 있다.

넷째로, 知的財産權 保護制度이다. 지적재산권 협상의 타결로 컴퓨터프로그램의 보호기간이 현행 創作後 50년간에서 死後 50년간으로 연장되었고, 營業秘密등에 대한 보호제도도 확립되어야 한다. 또한, 지적재산권 침해시 15배 이상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인정하고, 각국은 著作權 및 商標權 侵害物品의 유통을 저지하기 위해 稅關에 의한 통관정지를 청구할 수 있는 國境措置를 실시하게 되며, 상표법에 色彩商標制度를 도입해야 하는 등 협정안과 우리 제도가 상치되는 부분에 대한 법개정 등의 후속조치가 뒤따라야 한다.

2.2. 産業競爭力의 現況

우리 나라가 1960년대 이후 고도성장으로 世界 12大 貿易國으로 성장하였으나, 1980년대 후반 이후 우리 경제의 활력저하와 후발개도국의 추월 등으로 세계시장 점유율이 둔화되고

있다. 지난 30여년 동안 量的成長에 치중하여 온 경제발전이 한계에 다다르면서 1980년대말 이후 産業競爭力이 눈에 띄게 약화되고 있다.

지난 9월 6일 발표된 스위스 國際經營開發院(IMD)과 世界經濟포럼(WEF)의 『世界競爭力報告書』를 보면 우리 나라의 경쟁력 순위는 18개 新興工業國 중 1991년 3위에서 1994년 7위로 하락하여 새로운 변화에 대한 우리 산업의 대응능력이 현저히 약화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물론 이 보고서의 객관적 신뢰도에 대해 의문은 있으나, 경쟁력 저하의 주요요인으로서 국제화부문, 금융·자본시장부문, 정부부문에서의 非效率性을 지적하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産業의 競爭力은 결과로서 나타나는 輸出競爭力과 輸入競爭力에 의하여 판단될 수 있다. 우리 수출의 세계시장 점유율은 1988년 2.2%에서, 1990년 1.9%, 1992년 2.0%로 떨어졌다가 1993년에 2.2%로 회복되었다. 같은 기간 동안 美國市場에서의 점유율도 4.9%에서 2.9%로, 日本市場에서도 6.3%에서 4.9%로 떨어졌다.

다행하게도 금년 7월까지 우리의 수출은 12.8%가 증가하였는데, 이는 경쟁국인 日本의 6.2%, 臺灣의 4.3%보다 두배 이상 높아 우리의 경쟁력이 회복되고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엔高현상에 힘입은 바가 크다. 품목별로 보면 수출의 경우 전자전기·선박·자동차 등 중화학제품의 수출증가율이 16.3%로 호조를 보이고 있지만, 섬유제품·신발·콘테이너 등 노동집약적 제품은 5년째 수출이 감소하고 있으며, 수입의 경우 농산물·기계류·전자부품·항공기·섬유류 등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2.3. 競爭力脆弱의 原因

우리 산업의 競爭力脆弱 原因은 첫째로 1980년대 후반이후 지속되어 오고 있는 高費用構造 때문이다. 금융·인력·입지·물류 등 生産要素의 供給이 양적·질적으로 경쟁국의 수준에 크게 못미치고 있다. 賣出額에 대비한 金融費用은 경쟁국인 일본과 대만의 2~3배 수준에 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업의 財務構造도 경쟁국에 비해 매우 취약하다.

산업계의 人力需要와 연계되지 않은 인문계 중심의 교육체제로 매년 20만명 이상의 大學未進學者가 사회에 배출되는 가운데 산업계의 人力難은 날로 심화되고 있다. 기존의 교육체제에서 배출된 인력의 현장적응능력도 낮아 취업후 3~5년이 지나야 기술자로서 제구실을 할 수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이 人力不足이 심화되면서 生産性向上을 웃도는 賃金上昇과 勞使關係不安으로 전체 勞動費用이 경쟁국보다 빠르게 증가하여 경쟁력 약화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表 1〉 生産性增加率 및 賃金上昇率 比較

연 도	1986	1989	1991	1993	1986~1993
증가율(%)					
노동생산성	7.8	11.4	22.1	9.5	12.6
임 금	9.2	25.1	16.9	11.4	16.2

註: 1) 같은 기간 중 연평균 임금상승률: (대만) 10.5%, (싱가폴) 7.2%, (일본) 3.0%.

工業立地에 있어서도 그 동안 立地政策이 국토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농지 및 산지보전에 치중한 결과 용도지역 변경절차가 지나치게 복잡하게 운영되는 등 공장용지 공급측면에서 애로가 발생하고 있으며, 공단조성에 있어 높은 土地價格 외에 각종 負擔金이 추가됨으로써 공장용지가격이 경쟁국에 비하여 높은 상황이다.

〈表 2〉 競爭國과의 工場用地價格 比較

지 역	한 국(남동)	일본(센다이)	대 만(민웅)	미국(일리노이)
용지가격(\$/m ²)	176~231	121~132	52~118	21~62

경제규모의 확대와 대외교역량의 증가로 물동량이 크게 늘어났으나, 이를 뒷받침할 도로, 항만 등 社會間接資本施設의 확충이 부진하고, 이와 함께 物流分野의 경직적 제도운영, 물류체계의 비효율성 등으로 인하여 제조업에 있어 物流費用의 증가율이 賣出額의 증가율을 앞지르면서 기업의 원가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둘째로, 産業의 技術力이 미국의 1/10, 일본의 1/8, 독일의 1/5에 지나지 않는 등 선진국에 크게 뒤져 있어 新製品을 개발하거나, 高品質의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다. 조립·가공 등 일부기술은 선진국수준에 거의 접근하였으나, 설계·소재·고기능부품 등 核心技術과 尖端技術의 기반이 취약하여 주요기술은 해외도입에 의존하고 있다.

최근 技術開發投資가 증가하고 있으나, 투자규모면에서 기술선진국에 비해 크게 미흡하다. 1992년도에 우리 나라의 總研究開發投資는 63억불로서 선진국의 1/7~1/25 정도이며 GM과 같은 多國籍企業 1개사의 수준에 불과하다. 또한, 선진국의 技術保護主義 강화로 의 국으로부터 첨단기술의 이전이 어렵고 기술분야에서 축적된 知的資產(intellectual stock)이 미흡하며, 연구시설·정보 등 下部構造도 기반이 취약하다.

이와 같은 技術力 측면에서의 취약성으로 인하여 高費用構造에 따른 價格競爭力 弱화를 품질·생산성 등 非價格競爭力의 提高로 상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셋째로, 無限競爭時代에 步兵으로 싸워야 할 우리 기업들은 아직도 개방화·국제화·자유화의 企業環境變化를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적응도 미흡하다고 생각된다. 大企業 중에서 선두주자격인 전자·자동차 업계의 경우에도 선진국의 일류기업과 비

교하면 매출액이나 기술개발투자가 1/4~1/20 수준에 불과하다. 따라서, 非關聯業種으로의 多角化에 의한 產業의 擴張보다는 主力業種에 經營資源을 집중시키는 產業의 深化가 꾸준히 추진되어야 한다.

우리 產業의 底邊을 형성하고 있는 中小企業도 그 기반이 취약하다. 중소기업이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일본·대만 등과 비교하면 의형적인 事業體數에 있어서는 비슷한 수준에 있으나, 賣出額·附加價値 면에서는 크게 낮다. 中小企業은 금융·기술·인력 등 生産資源의 활용에 있어 大企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기도 하지만 기술축적·생산성향상 등 非價格競爭力 면에서 크게 취약한 실정이다.

3. 產業競爭力 強化를 위한 政策方向

3.1. 認識의 轉換

WTO體制가 1995년 1월 1일에 출범하게 되므로 UR協定の 履行期間을 대략 5년이라고 한다면, 2000년 1월 1일부터는 세계적으로 全面的인 經濟戰爭이 시작된다고 보아야 한다. 국내시장에서는 물론 국제시장에서도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이므로 競爭力이 있는 산업만이 살아남게 될 것이다.

이러한 개방화, 국제화의 도전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결론적으로 產業의 競爭力을 제고하는 길밖에 없으며, 經濟主體의 認識轉換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다.

첫째로, 國家의 競爭力은 企業의 競爭力에 달려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정부의 幼稚產業保護나 特定產業育成施策은 더 이상 수행하기가 불가능하므로, 기업 스스로가 市場經濟原理에 의하여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政府는 保護와 介入을 축소하고, 기업활동에 대한 걸림돌을 제거하며, 금리·토지가격 등 生産要素供給의 측면에서 국제경쟁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企業은 더 이상 정부의 보호나 지원을 기대하지 말고 스스로의 經營·術技革新과 生産性向上에 노력을 집중하여야 한다.

둘째로, 지금까지의 工業化過程에서 강조되었던 國產化政策과 外國企業 및 外國製品에 대한 차별적 시각에서 벗어나 消費者의 選擇權利를 존중하고 產業에 대한 인식을 한국이 소유한 산업(Korean-Owned-Industry)의 개념으로부터 한국에 기반한 산업(Korean-Based-Industry)의 개념으로 바꾸어야 한다.

셋째로, 정부의 역할은 경제주체가 公正하게 競爭할 수 있는 경기규칙을 정립하고, 기술 및 인력 개발, 사회간접자본 및 환경보호 투자 등 企業의 競爭力強化를 뒷받침 할 수 있는

기반을 튼튼하게 하는 데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3.2. 앞으로의 産業政策方向

이와 같은 認識의 轉換을 바탕으로 앞으로의 産業政策은 다음과 같은 방향에서 추진되어야 한다고 본다.

첫째로, 산업간·기업간 경쟁을 촉진시키는 경쟁여건의 조성이다. 신정부 출범 이후 기업활동에 대한 規制緩和를 꾸준히 추진해 오고 있으나, 기업들이 規制緩和를 體感하고 그 효과가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직결될 수 있도록 보다 근원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되어 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금융·토지·노동 등 핵심적 분야에 대해 규제완화 노력이 강화되어야 하며 일선 행정기관에서 규제완화조치가 제대로 집행되도록 실제운용상황도 계속 점검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규제완화에 따른 短期的 副作用과 既得權者의 不利益을 감내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의 조성도 효과적인 규제완화를 위하여 필요하다.

규제완화에 병행하여 각종 제도도 競爭指向的으로 改編되어야 한다. 금융부문의 경우 金利自由化에 의하여 금융시장에 競爭原理를 도입하고 금융기관의 經營自律化와 함께 통화량·금리·환율 등이 市場經濟原理에 따라 작동될 수 있도록 自律化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

民間企業의 投資에 대해서도 기술축적, 환경보호, 지역균형개발 차원에서 필요한 最小限의 介入에 그치고 企業의 自律과 責任에 맡겨져야 한다고 본다. 또한, 중소기업분야의 경우에도 固有業種 및 團體隨意契約 등 競爭制限的인 제도를 단계적으로 축소·조정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와 아울러 公共部門의 效率性 提高도 산업경쟁력의 강화를 위하여 중요한 과제이다. 정부가 公企業部門에 대해 民營化와 機能調整을 통하여 경제적 효율성을 높이려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지만, 해당공기업의 소유와 경영을 민간에 이양하는 것뿐만 아니라, 공기업이 누리고 있던 獨寡占的 地位를 해소하여 관련산업의 競爭與件을 조성하고 해당산업 전반의 경쟁력 향상을 가져올 수 있는 민영화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둘째로, 生産要素가 원활하게 공급되어 국제경쟁력을 갖추도록 하여야 한다.

산업경쟁력 강화의 요체는 지금과 같은 ‘高費用-低生産性 構造’를 극복할 수 있도록 금융·인력·입자·기술 등의 生産要素가 저렴한 가격으로 기업에게 원활히 공급되고, 특히 技術革新이 왕성하게 이루어져 경쟁력의 원천이 物的資本과 資本蓄積 중심에서 人的資本과 技術蓄積 중심으로 이행되어야만 한다.

우리 기업의 競爭與件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金融費用의 절감이 지속적으로 추

진되어야 할 것이다. 市中金利를 巨視經濟의 中心指標로 활용하는 등 기업의 資金需要에 맞추어 탄력적으로 巨視經濟를 운용함으로써 金利引下를 유도하고, 金融自律化의 추진을 통한 금융산업의 경쟁력과 효율성 제고로 金融仲介費用을 축소에 나가며, 해외의 유리한 자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資本自由化의 추진과정에서 제조업의 해외자금조달 여건개선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産業人力이 원활하게 공급되도록 산업계의 人力需要와 연계한 技術教育體系로의 개편이 시급하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實業高→專門大→技術大學으로 이어지는 기술교육체계의 구축과 현장실습 위주의 工高 教育課程 改編을 위한 작업이 진행 중이며, 理工界를 중심으로 대학과 전문대학의 정원을 늘리고, 다양한 기술교육기관에 의한 현장위주의 技術訓練을 강화하는 데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급증하는 기업의 立地需要에 부응하기 위하여 보전위주의 國土利用管理體系를 재정비하여 증가하는 土地需要에 신속적으로 대응해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物流分野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社會間接資本施設의 확충과 함께 流通產業에서의 規制緩和과 情報化의 촉진도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된다. 특히, 社會間接資本施設의 확충을 위하여 보다 과감한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産業技術力을 강화하기 위하여 산업발전단계에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戰略的 技術開發事業이 긴급하다. 이에 따라 생산현장에서의 短期 共通隘路技術 開發事業, 성장산업 부문에서의 中期據點技術 開發事業, 미래산업부문에서의 長期·大型 尖端技術 開發事業 등이 추진되고 있다. 또한, 산업기술 관련기관들간의 협력체제를 강화하고, 기술개발의 성과가 세계시장에서의 경쟁력향상으로 신속히 이어지도록 開發技術의 事業化를 촉진하는 것도 필요하다.

특히, 금번 UR協定에서 기술개발분야에 대한 보조금지원 허용범위가 크게 확대되어 産業的 研究(industrial research)는 총소요비용의 75%, 競爭前 開發活動(pre-competitive development activity)은 총소요비용의 50%까지 지원이 허용되고 있어 기업의 연구·기술개발 활동을 적극 지원하기 위한 技術드라이브施策을 강력하게 펴나가야 한다.

셋째로, 産業組織政策이 강화되어야 한다.

지금까지는 유망산업의 육성, 경쟁력 약화산업의 합리화 등 産業構造調整政策에 치중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대기업의 비관련다각화와 경제력집중의 억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협력, 중소기업 상호간의 협력과 경쟁 등과 관련한 정책을 강화함으로써 産業組織의 效率性을 높이는 데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

國內可用資源의 상당부분을 소수의 大規模企業集團이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규모 기업집단의 비관련다각화를 억제하고 專門化된 業種에서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유도해 나가면서, 이와 동시에 中小企業의 競爭力 提高를 위하여 노력해야 할 것이다. 中小企業의 경쟁력에 의한 뒷받침을 받지 않고서는 大企業의 경쟁력 강화를 기대하기가 어렵다.

中小企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자동화·정보화에 의한 生産性과 品質의 向上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또한, 기술·지식집약적인 중소기업의 創業이 활발하게 이루어 지도록 행정절차의 간소화등 제도적 개선과 함께 벤처캐피탈(venture capital)의 활성화, 기술·정보에 대한 접근가능성과 활용도제고 등에도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地方化時代에 대비한 地域經濟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地方中小企業의 발전이 중요하다. 현재 地方自治團體 주관으로 그 지역의 특성과 여건에 알맞는 地方中小企業 育成計劃을 수립·시행하고 있는데 앞으로 중소기업의 성장을 위한 地方自治團體의 역할이 보다 강화되어야 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公正한 去來秩序의 정착, 그리고 기술·정보 등에서의 相互補充的 協力關係의 형성 등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中小企業協同組合이 구심체가 되어 중소기업간 협력사업이 활성화되고 중소기업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넷째로, 産業平和가 조속히 정착되어야 한다.

1987년 6·29宣言 이후 근로자들의 잠재해 있던 욕구가 일시에 분출되면서, 하루에 10건 이상의 분규가 발생하는 등 勞使關係가 對立構圖로 악화되기 시작하였다. 이와 함께 1987년 이후 두자리 수로 급등하기 시작한 賃金引上率은 1989년 25.1%라는 사상 유례가 없는 기록에 이르고난 후, 1993년까지 하락추세를 보이고는 있으나, 선진국이나 경쟁국에 비하여 아직도 매우 높은 실정이다.

과도한 賃金引上和 더불어 우리 산업의 경쟁력 확보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은 소모적이고 비경제적 요인에 치중하고 있는 전근대적인 勞使關係이다. 우리 나라의 경우 노사간의 對立構圖가 근무환경이 열악한 中小企業보다 오히려 국가경제적으로 비중이 크고 근로조건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大企業에서 連帶罷業 형태로 나타남으로써 국민경제 전체에 상당한 손실을 초래하고 전반적인 노사협력 분위기 정착에 부정적인 영향을 크게 미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대립적인 노사구도를 청산하고 産業平和를 정착시킴으로써 産業現場에 일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최근의 분규사태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組合員 多數의

利益과는 무관하게 勞組執行部の 기득권 보호와 정치지향적인 노조관행을 개선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노사양측의 근본적인 認識轉換과 함께 不當勞動行爲를 勞使兩側에 균형되게 인정하고, 無勞動無賃金原則과 인사·경영권의 본질적 문제에 대한 爭議行爲를 금지시키는 등의 제도적 개선도 이루어 나가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급변하는 현실에 맞추어 勤勞基準도 합리적으로 재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예를 들어 선진국이나 경쟁국보다 많은 休日을 점진적으로 줄여나가고, 이에 대신하여 겨주토요휴무제·변형근로시간제 등으로 生産性과 연계시키고, 외국에는 유례가 없는 월차·생리휴가제도를 연차휴가제도로 흡수하는 것이 필요하다.

최근 들어 勞經和合宣言, 勞組側의 無爭議宣言 등에서 나타나듯이 점차 확산되고 있는 노사간의 同伴者的 協力關係가 빠른 시일내에 정착되도록 기업, 근로자, 정부 모두가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다. 한 나라의 노사관계 선진화 정도는 결국 그 나라 國民의 意識水準에 따른다는 각국의 경험에서도 볼 수 있듯이, 치열한 경쟁의 시대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우리 국민 모두가 生産的이고 協力的인 勞使關係의 유지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데에 깊은 공감대를 갖게 된다면 産業平和의 정착도 한결 그 시기를 앞당길 수 있을 것이다.

4. 맺 음 말

UR協商的 종결과 WTO體制的 출범은 21세기 한국경제를 좌우할 挑戰임과 동시에 機會이기도 하다. 그것이 우리 경제에 대해 선진국진입을 위한 機會가 될 것인가, 아니면 선진국진입을 가로막는 挑戰으로 작용할 것인가는 오로지 우리의 對應姿勢에 달려 있다.

이데올로기對立時代의 종언과 UR協商的 타결로 21세기에는 ‘經濟的 實用主義’가 전세계적인 普遍的 價値로 정립되고 자본주의체제 사이에서의 경쟁만이 존재하게 될 것이므로 經濟發展戰略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이 요구되고 있다. 政府는 國家經營方式을 과감하게 전환해야 하며, 企業들도 세계적인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經營革新 노력이 필요하다.

WTO體制 출범에 따른 開放化·國際化的 도전을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意識轉換을 통하여 국민 각자의 個別競爭力을 제고하는 것이 근본적이고 시급한 과제이다.

첫째, 國家的 次元에 艱難한 事業의 추진을 가로막는 “集團利己主義”가 추방되어야 한다.

둘째, 우리 경제의 成長潛在力을 健實하게 키워나가기 위하여 “過消費”가 사라져야 한다.

셋째, 개인의 창의와 노력을 바탕으로 한 能力指向的인 發展을 가로막는 “請託主義”가 배격되어야 한다.

넷째, 製造業을 경시하고 富의 健全한 蓄積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反企業文化”에서 벗어나야 한다.

다섯째, 조직내에서 惡貨가 良貨를 구축하는, 노력과 성과가 정당하게 보상받지 못하는 “非合理的 組織文化”가 없어져야 한다.

지금 우리는 과거의 잘못을 따지는 데에서 벗어나 未來指向的 代案을 찾는 데에 모두의 지혜와 힘을 모아 각 경제주체가 先進國進入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자신 있게 대응해 나가야 할 시점에 서있다. 이를 위하여 국민 각자가 自身の 位置와 能力에 맞추어 우리를 앞서가는 국가의 競爭相對를 벤치마킹(Bench-Marking)하여 그들을 하나하나 이겨 나갈 것을 提案한다.

商工資源部 次官

427-760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전화 : (02) 503-9402

팩시 : (02) 504-6280

參 考 文 獻

대외경제정책연구원(1994): “WTO 출범과 신교역질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박운서(1994): “WTO체제와 우리 산업의 경쟁력강화,” 상공자원부.

산업연구원(1994): “21세기를 위한 한국산업의 비전과 발전전략,” 산업연구원.

상공자원부(1993): “신경제 5개년계획 산업발전전략부문,” 상공자원부.

The World Bank(1994): “East Asian Leadership in Liberalization,” The World Bank.

UNCTAD(1994): “The Outcome of the Uruguay Round; An Initial Assessment,” UNCTAD.